

오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제정 2026년 5월 6일 조례 제2365호

제1조(「오산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법인등기부등본에”를 “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”로, “되어”를 “기재되어”로 한다.

제2조(「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인등기부등본에”를 “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”로 한다.

제3조(「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법인등기부등본”을 “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”로, “등록증에”를 “등록증에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